

## 제 21 장 제도 규정

### 제 21.1 조 접촉선

1.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한다. 특정 접촉선 또는 조정자가 다른 장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이처럼 지정된 접촉선은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다룬다.
2.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한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,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.

### 제 21.2 조 협력

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을 포함하여,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 또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.

### 제 21.3 조 공동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, 한국의 통상장관과 호주의 통상장관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.
2. 공동위원회는
  - 가.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.
  - 나. 부속서 21-가의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공동위원회 산하의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,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.
  - 다.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.
  - 라. 제20.7조에 따라 이 협정상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분쟁의 해결을 추구한다. 그리고
  - 마.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.
3. 공동위원회는

- 가. 임시 및 상설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.
  - 나. 각 당사국의 비준을 조건으로, 이 협정의 모든 개정 또는 그 밖의 수정을 검토 및 결정할 수 있다.
  - 다. 적절한 경우,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.
  - 라.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. 그리고
  - 마.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4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, 그 후 3년간 매년, 그 이후에는 상호 결정하는 대로 회합한다.

#### 제 21.4 조 위원회 및 작업반

- 1. 부속서 21-가의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위원회 및 작업반은 공동위원회의 산하에 설치된다.
- 2. 설치된 위원회 또는 작업반의 회의의 구성, 기능 및 빈도는 이 협정의 관련장에서 규정된다. 위원회 및 작업반은 양 당사국의 관련 공무원이 공동의장이 된다. 위원회 및 작업반의 회의는 양 당사국이 공동 합의한 장소 및 날짜에 소집되고 직접 또는 양 당사국이 공동 결정한 그 밖의 모든 수단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다.
- 3.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위원회나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.
- 4. 공동위원회산하에 있는 위원회 및 작업반은 자신의 회합에 앞서 충분히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. 그들은 공동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.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어떠한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.
- 5. 공동위원회는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을 해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.
- 6. 양 당사국은 임시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 모든 임시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의 회의의 구성, 기능 및 빈도는 양 당사국이 결정한다.

## 제 21.5 조 의사 결정

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·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로 정한다.

**부속서 21-가**  
**위원회 및 작업반**

1. 설치된 위원회는

- 가. 제2.11조(상품무역위원회)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
- 나. 부속서 3-나에 따른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
- 다. 제4.12조(원산지 규정 및 무역 원활화 위원회)에 따른 원산지 규정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
- 라. 제8.16조(금융서비스 위원회)에 따른 금융서비스 위원회
- 마. 제9.25조(통신 위원회)에 따른 통신 위원회
- 바. 제13.12조(지식재산 위원회)에 따른 지식재산 위원회
- 사. 제16.11조(농업 협력 위원회)에 따른 농업 협력 위원회, 그리고
- 아. 제16.19조(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)에 따른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위원회

2. 당사국이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임시 위원회는

- 가. 제17.3조제2항에 따른 임시 노동위원회, 그리고
- 나. 제18.6조제2항에 따른 임시 환경위원회

3. 설치된 작업반은

- 가. 부속서 7-가(전문직 서비스)의 제3항에 따른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

4. 당사국의 요청으로 설치될 수 있는 임시 작업반은

- 가. 제5.9조제4항에 따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임시 작업반, 그리고
- 나. 부속서 7-나의 제16조(제도적 장치)에 따른 임시 시청각 공동제작 위원회